

1. 개정이유

중형 택시운송사업에서 대형승합·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변경을 신고제로 하도록 하여, 대형승합·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택시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전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해서는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를 제외하도록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 구분변경시 사업계획 변경 신고제 확대(안 제33조)

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제외(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별표 4 제1호나목2)라) 중 “자동차는”을 “자동차, 플랫폼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운송가맹점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 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5. (생 략) 6.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의 구분 변경(다만,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모범형 택시운 송사업으로의 변경 및 지방자 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 변경은 제외하 다) ② ~ ⑧ (생 략)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의 구분 변경 ② ~ ⑧ (현행과 같음)